

## 조선시대 기로소 영수각 조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nstruction of Giroso Youngsugak in the Joseon Dynasty

김 석 현\*

Kim, Suk-Hyun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history of Giroso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examine the authenticity of the history regarding Taejo's admission to Giroso, and identify the background and architectural form of Giroso Youngsugak. Research confirms that Taejo joined Giroso in 1394 at the age of 60, but there is no evidence of his name being recorded in the Giroso Seoru. Giyeonghoe(耆英會) has been frequently suspended since the 16th century, an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the king's permission for Giyeonghoe was not readily granted. Taejo's admission to Giroso and the story of Giroso Seoru started emerging as a justification for resuming Giyeonghoe. When King Sukjong joined Giroso, a new building called Youngsugak was required to enshrine Eochup(royal writings), and it was modeled after Jongbushi Seonwongak. Although Youngsugak no longer exists, the form of Giroso Youngsugak from the past can be observed through Uiseong Gounsa Yeonsujeon, which was constructed in 1904 based on the model of Giroso Youngsugak.

주제어 : 조선시대, 기로소 영수각, 종부시 선원각, 의성 고운사 연수전

Keywords : Joseon Dynasty, Giroso Youngsugak, Jongbushi Seonwongak, Uiseong Gounsa Yeonsujeon

## 1. 서 론

## 1-1. 연구배경

기로소의 편제와 운영에 관한 기록인 『기사지(耆社志, 1849년 편찬)』에 따르면, 조선에서 임금이 기로소에 처음 입소한 것은 태조로 명기되어 있다.<sup>1)</sup> 하지만 조선 왕조실록의 『태조실록』에는 태조의 기로소 입소와 관련된 어떤 기사도 나오지 않는다. 태조의 기로소 입소와 관련된 고사는 17세기 이후부터 등장하는데, 그 진위 여부는 숙종이 기로소 입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왕실과 신료들 사이에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숙종의 입소(1719년)를 계기로 기로소의 위상은 변화

한다. 성종연간인 1484년(성종 15)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기로소는 이전(吏典) 소속이며 경아전(京衙前)조에 귀후서사학오부기로소(歸厚署四學五部耆老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1746년(영조 22)에 『경국대전』을 개정·증보하여 완성한 『속대전(續大典)』에는 경관직(京官職)조에 기로소가 기재되어 있고, 정일품아문(正一品衙門) 보다 상위에 올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85년(정조 9)에 완성된 『대전통편(大典通編)』과 1865년(고종 2)에 완성된 『대전회통(大典會通)』에도 기로소는 정일품아문의 상위 관부로 기재되어 있다. 기로소는 조선 전기까지는 한양의 주요 관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숙종의 입소 이후인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정일품아문의 상위 관부로 그 위상이 변화하였고, 영조와 고종의 기로소 입소가 이어지면서 그 권위는 지속되었다. 특히, 숙종의 기로소 입소 후 건립한 영수각(靈壽閣)은 어첩이 봉안되었기에 기로소가 정일품아문의 상위 관부로 등극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각이자 기로소 권위의 상징이었다.

기로소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기로연회(연회도 분석

\* Corresponding Author : ksh1980@hotmail.com

이 연구는 「조선시대 기록소 건축과 의성 고운사 연수전」, 『고운사 소장 기록유산 일체 조사 사업-고운사 연수전의 가치』(대한불교조계종 고운사, 2022.11.11.) 및 「조선시대 기록소와 의성 고운사 연수전」, 『고운사 연수전』(의성군, 2022.12.30)에 발표한 내용을 보완하고 심화·발전시킨 연구임.

1) 『기사지』 권2, 乙編 靈壽玉牒 기사 : 我 太祖 肅宗 英宗三聖朝相繼入耆社 <후략>

포함)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석,<sup>2)</sup> 사회 복지 정책 관점에서의 분석,<sup>3)</sup> 궁중회화 및 연회에서 춤과 음악 관련 분석·고증<sup>4)</sup>이 주로 이루어졌다. 건축사적 관점에서 바라 본 기로소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상태이다.<sup>5)</sup> 또한 숙종연간 이후 기로소의 상징적 전각인 영수각에 대한 조영 모형을 고찰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1-2. 연구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조선 전기 기로소의 설치와 연혁을 살펴 보면서 태조의 기로소 입소와 관련한 고사의 진위를 밝히고, 숙종연간 기로소 영수각의 조영 배경과 조영 시 모범이 되었던 건축 형식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대상으로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기사지』 등의 사료와 기로소 관련 회화를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먼저 태조연간 한양에서 이루어진

2) 정치 및 사회 상황에 대한 연구는, 강관식, 「규장각 소장 光海君 13年(1621) <기석설연지도> 잔편의 복원적 고찰과 정치적 맥락의 시론적 해석」, 『한국문화 Vol.0 No.8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中村榮孝, 「朝鮮時代の耆老所に就いて」, 『市村博士古稀記念 東洋史論叢』, 富山房, 1933., 박상환, 「조선시대의 기신정책 : 기로소의 위상분석을 중심으로」, 『홍대논총 Vol.22 No.1, 홍익대학교, 1990.], 신진혜, 「영조 12년(1736) 노·소론 화해를 위한 기로신 선은 시행과 의미」, 『사학연구 Vol.0 No.140, 한국사학회, 2020.], 심예원, 「1744년(영조 20) 영조의 기로소 입사 의례와 정치적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Vol.-No.96, 조선시대사학회, 2021.], 안태욱, 「조선궁중연향도의 특징과 성격」, 『동악미술사학 Vol.0 No.13, 동악미술사학회, 2012.], 오민주, 「조선시대 기로회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유시영, 「영조대 기로연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임부연, 「유교 군왕의 '기로' 정치 : 영조의 전략적인 실천들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Vol.- No.43,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2.], 최경현, 「조선시대 기영회도의 일례: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관본 <선조조기영회도> 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Vol.- No.40, 미술사연구회, 2021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3) 박태용, 「구한말 노인복지사업」, 『사회복지연구 vol.11,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83

4) 나동숙, 「영조의 기로소 입사 기념, 갑자(1744)진연 악장 <維聖之曲> 과 <於顯曲>」, 『우리문화연구 Vol.0 No.43, 우리문화회, 2014.], 방에영, 「조선말기 연향 가구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송상혁, 「광해조 도상을 통해본 연회음악 고찰」, 『은지논총 Vol.0 No.13, 은지학회, 2005.], 송혜진, 「영조조(英祖朝) 궁중 연향 기록과 도상」, 『한국음악문화연구 Vol.8, 한국음악문화학회, 2016.], 신경숙, 「숙종조 기로 연향악장 <유천지곡(維天之曲)>」, 『동방학 Vol.2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3.], 신경숙, 「『외진연악장』(1902.4)의 '가사' 연구」, 『시조학논총 Vol.38, 한국시조학회, 2013.], 조경아, 「그림으로 읽는 조선시대의 춤 문화 II : 관아공간의 춤 그림」, 『무용역사기록학 Vol.58, 무용역사기록학회(구 한국무용사학회), 2020.], 차영량, 「조선시대 기로연 기물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등이 있다.

5) 조선 후기 사찰에 건립된 기로소 원당에 대한 고찰에서 기로소 전각에 대한 건축적 고찰이 이루어졌다.(이용운, 「조선후기 사찰에 건립된 기로소 원당에 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 Vol.3, 불교미술사학회, 2005)

관영 영선 사업의 시간대별 과정과 기로소의 설치 과정을 살펴 보면서 태조연간의 기로소 설치 여부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조선 전기 기로소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기로연회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여 당시 왕실과 사대부들이 상정하고 있었던 기로소의 성격과 기로연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기로소의 복구와 운영 상황을 통해 숙종의 기로소 입소 시 쟁점이 되었던 태조의 기로소 입소 및 기로소 서루와 관련된 고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의도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숙종의 기로소 입소를 계기로 어첩을 봉안하기 위해 건립한 영수각의 조영 시 모범이 된 건물을 밝히고, 그 용도와 형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조선 초기 기로소의 설치

### 2-1. 태조연간 한양의 영건사업과 기로소 관계

숙종의 기로소 입소 논의 때 이루어진 쟁점 중 하나는 임금이 군하의 기관인 기로소에 입소하는 것이 가당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신료들이 내세웠던 명분으로는 태조가 60세 때 기로소에 행차하여 서루(西樓)에 어필로 제명하였다는 것, 즉 태조의 기로소 입소를 내세웠다. 다만 당시에도 기로소 서루가 임진왜란으로 불타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 고사(古事)는 몇몇 사대부가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sup>6)</sup>

태조가 60세가 된 해는 1394년(태조 3)이며, 이 시기는 아직 개성이 조선의 수도였을 때이다. 태조가 한양으로의 천도를 위해 새로운 도성과 왕궁터를 직접 둘러본 것은 1394년 8월이다.<sup>7)</sup> 같은 해 9월 1일에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하고,<sup>8)</sup> 11월 3일에 공작국(工作局)을 설치한다.<sup>9)</sup> 그리고 12월 4일에 종묘 터와 궁궐터에 신료를 보내 오방(五方)의 지기(地祇)에게 제사 지낸 뒤 궁궐의 조성과 도성 내 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sup>10)</sup> 따라서 태조가 60세가 되

6) 관련 내용은 4장과 5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7)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3일 경진 1번째 기사 : ○庚辰/上相宅于舊闕之基, 觀望山勢 <후략>

8)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1일 무술 1번째 기사 : ○戊戌朔/置新都宮闕造成都監. <후략>

9)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3일 기해 1번째 기사 : ○己亥/始置工作局.

10)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2월 4일 기사 1번째 기사 : ○己巳/遣中樞院副使崔遠于營宗廟之地, 又遣僉書中樞院事權近于營宮室之所, 致祭五方地祇, 以開厥基. <후략>

던 때에는 한양의 궁성과 주요 관청은 완성된 것이 없는 상태였다.<sup>11)</sup>

17세기 이후 신료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태조의 어필 제명이 있었던 기로소 서루는 징청방(澄淸坊)에 위치하였다. 이 자리는 육조에서 호조의 남측 자리에 해당하며, 육조 거리 전체에서 남동 측면에 위치한다.<sup>12)</sup>

한양에 새 궁궐과 종묘, 주요 관청이 조성된 것은 1395년(태조 4) 9월 29일이며, 이때 상서사(尙書司)를 비롯해 승지방(承旨房), 중추원(中樞院), 삼군부(三軍府) 등이 건립되었다<sup>13)</sup>. 하지만 이 시점에도 아직 궁궐과 주요 관청의 조영 공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었으며, 1398년(태조 7) 4월경에야 궁궐과 관아의 주요 건물들의 조영이 완공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sup>14)</sup> 또한 광화문 앞의 육조거리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은 1413년(태종 13) 광화문 앞의 대로 좌우에 긴 행랑을 건설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1394년(태조 3) 한양의 징청방 기로소 서루에 태조의 어필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한양의 관영 건축 조영 사업의 시간 순서 상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태조가 즉위 초기 개성에 있을 때 기로소를 설치하고, 그곳에 입소했다는 어떤 기록도 『태조실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2-2. 조선 초기 기로소의 설치

기로소란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세종연간부터이다. 『세종실록』 1428년(세종 10) 2월 10일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태종 즉위 초에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칭호를 바꾸자는 신료들의 건의가 있었다. 이에 세종은 변계량(卞季良)이 제안한 명칭인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로 정하였고,<sup>15)</sup> 이때부터 치사기로소 또는 약칭으로 기로소(耆老所), 기사(耆社) 등으로 불리게 된다.

11) 심예원, 앞의 책, 2021, 87쪽에서도 1394년 시점에는 태조가 어휘를 남길 한양의 기로소 관서가 없었던 것을 지적하며, 태조의 기로소 입소 고사에 대한 사실성에 의문이 드는 것을 지적하였다.

12) 현재 서울 세종로의 KT광화문 지사와 교보생명 건물 사이 지역에 해당한다.

13)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29일 경신 6번째 기사 : ○是月, 太廟及新宮告成。 <중략> 門南左右, 分列議政府、三軍府、六曹、司憲府等各司公廡。

14) 이상협, 「조선시대 육조거리에 대한 고찰」, 『서울과 역사』 제81호, 서울역사편찬원, 2012, 82쪽

15)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0일 임술 4번째 기사 : <전략> 但號爲前銜宰樞所, 實爲未便。 伏觀詔書及教旨, 皆曰文武大小臣僚、閑良耆老等, 前朝亦謂致政宰樞所, 乞以耆老宰樞所, 耆老所二號, 詳定稱下。" 命下詳定所議之。 李稷議: "宜稱前銜兩府。" 黃喜、許稠議: "耆老所。" 卞季良議: "致仕耆老所。" 鄭招議: "朝請所。" 從季良議。

상술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로소의 전신 기관인 전함재추소는 태조연간이 아닌 태종 즉위 초에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태종연간의 전함재추소 설립은 『태종실록』 1411년(태종 11) 12월 15일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함과 검교 재신(檢校宰臣)이 정조(正朝), 임금 탄생일에 하례할 때 의지할 곳이 없어 임사(任使)할 사람과 회소(會所)의 마련을 의정부에서 건의하였고, 태종이 이를 따랐다는 내용이다.<sup>16)</sup> 1411년은 태종이 개성에서 한양으로 다시 환도한 지 6년이 지난 시점이기에 한양에 전함재추소가 설치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종연간에 전함재추소가 치사기로소(약칭 기로소)로 명칭이 바뀌었고, 조선 후기까지 그 관제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sup>17)</sup> 다만, 태종의 전함재추소 및 세종연간의 기로소가 육조거리 남동측의 징청방에 자리했는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15세기 후반의 『동국여지승람』에는 기로소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가, 16세기 초중반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기로소가 징청방에 위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18)</sup> 따라서 16세기 초 이후부터 조선 말기까지 기로소는 육조거리의 징청방에 소재했던 것은 알 수 있다.

## 3. 조선 전기 기로소 운영과 기영회(기로회)

### 3-1. 조선 전기 기로소 운영

조선시대 전기 기로소의 운영은 사료 부족으로 상세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앞서 언급한 『세종실록』에서 1428년(세종 10) 2월 10일에 전함재추소를 치사기로소로 개칭하는 과정의 기사를 살펴보면 기로소의 전신이었던 전함재추소의 운영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sup>19)</sup> 전함재추소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관련 아문(衙門)이 없었기에 퇴직한 2품 이상의 한량(閑良)·기로(耆老)들이 나라의 경사와 임금의 행차·출입을 알 수 없게 되어 신하

16)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2월 15일 신축 6번째 기사 : ○賜前銜檢校宰樞會所。 議政府上言: "前銜及檢校宰臣, 於正朝誕日凡賀禮, 無所依處, 宜給任使人與會所。" 從之。

17) 中村榮孝, 앞의 책, 1933, 13쪽에서도 태종연간의 전함재추소 설치 및 세종연간의 기로소 확립 과정을 통해 볼 때 태조와 기로소는 관계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1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 「경도(하)」: 耆老所。在中部澄淸坊。二品以上年七十者相會之所。

19)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0일 임술 4번째 기사 : ○禮曹據前銜宰樞所上言啓: 本所古無衙門, 二品以上閑良耆老, 無所依處, 散亂無統, 雖國有慶事及行幸出入, 皆不得知, 殊失人臣之禮。 惟我太宗恭定大王即位之初, 設立衙門, 賜公廡田一百結、奴婢五十口、書題二十名。 每當誕日正至及國有慶事行幸出入之時, 臣等咸集明庭, 以行其禮, 誠萬世不刊之令典也 <후략>

의 예절을 잃었기에, 태종 즉위 초에 전함재추소를 세웠다고 한다. 또한 당시 전함재추소는 예조 소속으로, 태종이 공해전(公廩田) 1백결, 노비 50명, 서제(書題) 20명을 내렸다고 한다. 운영과 관련해서, 임금의 탄생일, 정조(正朝)·동지(冬至) 때,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금의 행차와 출입이 있을 때 퇴직 신료 등도 임금에게 예를 행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태종연간에 전함재추소에 할당한 공해전은 세종연간에 기로소로 바뀐 다음에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45년(세종 27)에 아문에 대한 전제(田制)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개정 이후에도 기로소는 기존의 공해전 1백결을 유지한다.<sup>20)</sup> 공해전 1백결의 규모는 작은 것이 아닌데, 당시에 궁궐을 호위와 제사 담당 제관의 자리를 마련하던 군대 조직인 충호위(忠扈衛)가 공해전 1백결을 받고 있었고, 의료행정 및 의학교육의 중추기관인 전의감(典醫監)이나 도화원은 30결을 받고 있었다.<sup>21)</sup> 기로소 운영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재원이 할당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2. 조선 전기 기영회(기로회)의 전개

조선시대 전기에 이루어진 기영회(기로회)<sup>22)</sup>는 사대부의 사적인 회합과 임금의 재가를 통해 열린 회합으로 구분된다.<sup>23)</sup>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로회는 『태종실록』 1402년(태종 2) 4월 17일 기사에서 볼 수 있으며, 서원 부원군(西原府院君) 이거이(李居易)가 기로회를 베풀었는데, 이때 태종이 술을 내려 주었다.<sup>24)</sup> 다만 이는 이거이의 사적 회합 자리였다.

임금의 재가를 통해 이루어진 기영회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세종실록』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33년(세종 15) 1월 19일에 우의정으로 치사(致仕)한 유관(柳寬)은 옛 중국 제도를 따라 시직(時職)과 산직(散職)의 1, 2품이었던 나이 70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기영회 개최를 건의한다.<sup>25)</sup> 다음 날인 20일에 세종은 기영회 개최를 허락하고 선운(宣醞)과 안주를 내린다.<sup>26)</sup> 그 다음 날인 21일에는 좌의정으로 치사(致仕)한 이귀령(李貴齡)이 임금의 허락 없는 기영회는 사적 모임(私會)으로 지목될까 두려우니, 재가 하에 매월 정기적인 기영회의 개최를 건의하게 되는데, 세종은 이를 불허한다.<sup>27)</sup>

세종연간 이후에도 기영회(기로회)는 지속되는데, 세조연간 이후에는 정기적인 기영회 개최가 이루어진다. 『세조실록』의 1460년(세조 6) 9월 9일 기사에 따르면, 기로들의 중구연(重九宴)에 임금이 선운을 내렸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sup>28)</sup> 중구연은 매년 9월 9일에 이루어지는 연회를 의미하기에 15세기 중반에는 이미 정기적인 기로연이 정착된 것을 알 수 있다. 중구연에 더해 세조연간에는 매년 3월 3일에도 기로연 개최를 정례화하게 된다.<sup>29)</sup> 이러한 연 2회 기영회의 정례적 개최 배경에는 세조의 등극 이후 성종연간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한명회가 있었다. 한명회는 기존의 기영회(기로회)가 전함 대상관만 참여하였던 제한을 풀어, 정승을 지낸 자와 2품 이상의 70세가 된 자는 시임(時任)과 산관(散官)을 논하지 말고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개최의 명분은 세종연간의 기영회(기로회)에서 인용하였다.<sup>30)</sup> 또한 한명회가 주도한 기영회(기로회)는 급기야 70세 이하의 현직 고관들도 참석하는 정치적인 회합 자리로 변하게 된다.<sup>31)</sup>

25)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19일 계유 4번째 기사 : ○右議政仍令致仕柳寬啓曰 <중략> 乞依古制, 時散一二品中年七十以上若干人, 稱耆英會, 歌詠聖德, 耆臣之至願。

26)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20일 갑술 2번째 기사 : ○上謂知申事安崇善曰: “柳寬上書, 欲設耆英會, 予甚嘉之。 <중략> 上命右代言權孟孫, 齎宣醞珍羞往慰之。

27)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21일 을사 2번째 기사 : ○左議政致仕李貴齡上言 <중략> 近日欲邀諸老, 恐外人指爲私會, 不敢自擅, 皇恐悉深。伏望聖慈使黃耆餽背之老, 自今每月一會, 歌詠聖德, 以樂餘生, 不勝幸甚。上曰: “雖閑居老臣, 豈可每月而設會乎?” 遂不允。

28)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9일 임오 2번째 기사 : ○賜耆老重九宴于慕華館。命左承旨金從齊齎宣醞往賜之。

29) 최경현, 앞의 책, 2021, 197쪽

30) 『성종실록』 34권, 성종 4년 9월 9일 정유 2번째 기사 : ○設耆老宴于訓鍊院, 命都承旨李崇元, 齎宣醞賜之。鄭麟趾、鄭昌孫、申叔舟、韓明澮、沈澮、金碩、尹子雲與焉。先是, 耆老宴, 只令老年前銜堂上參焉, 至是命曾經政丞及二品以上年七十者, 勿論時散赴宴。韓明澮援引世宗朝耆英會事以啓, 有是命。

31) 최경현, 앞의 책 2021, 197쪽

20)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 7월 14일 을유 1번째 기사 : ○乙酉/議政府據戶曹呈申: “今田制改詳定事及可革條件, 磨勘後錄。 <중략> 一, 前此各司公廩田, 並皆革之, 而惟駙馬府二百五十結, 致仕耆老所一百結, 圖書院三十結, 忠扈衛一百結, 惠民局二十結, 濟生院典醫監各三十結, 東活院二十五結, 西活院三十結, 司譯院八十結如舊。凡各司點心, 皆分事務緊慢, 以國庫支給, 除駙馬府耆老所外, 上項各司公廩田革之。 <하략>

21) 각주 20번 참조.

22)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영회(耆英會)는 종친으로 70세 이상인 정1품에서 2품의 경연 대상이 참가하는 연회로, 기로연(耆老宴)은 전함당상이 초대되어 이루어지는 연회로 구분하였다(中村榮孝, 앞의 책, 1933, 14쪽).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기로회 및 기로회의 참여자를 살펴보면, 상기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이다. 기로소 주최의 연회명은 기로회나 기로연, 기영회, 기영연, 기회(耆會)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최경현, 앞의 책, 2021, 193~195쪽

24)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4월 17일 기사 2번째 기사 : <전략> 西原府院君 李居易設耆老會, 又賜酒。

성종 이후 연산군 때에도 정기적인 기영회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잦은 기영회로 국고가 낭비되고 있으니 이를 줄이자는 건의가 올라오기도 하였다.<sup>32)</sup>

중종연간인 16세기에는 흥년 등을 이유로 축소되거나 중지되는 사례가 확인되나, 임진왜란 이전까지 기영회(기로회)가 지속된다.<sup>33)</sup>

기영회(기로회)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기로소 및 기로소 이외의 장소로 구분된다. 기로소에서 이루어진 기로연은 세종연간(1449년 12월 10일)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sup>34)</sup> 기로소 이외의 연회 장소는 보제원과 모화관, 훈련원, 성균관, 망원정 등이 있는데, 성종연간 이후의 기영회는 주로 훈련원에서 개최되었다.<sup>35)</sup>

### 3-3. 조선 전기 기영회(기로회)에 대한 인식

앞서 고찰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위 관직에서 물러난 고령의 사대부들이 사적으로 기영회를 여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양하는 분위기였고, 임금의 재가를 통한 기영회가 명분이 있는 회합이 될 수 있었다.<sup>36)</sup> 세종연간에 기영회 개최를 위해 임금의 재가를 받을 때 신료 유관 및 이귀형이 중국의 옛 제도를 인용하였을 뿐, 태조연간의 기영회나 태조의 기로소 입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세종의 기영회 참석도 건의되지 않았으며, 세종은 잔치에 술과 안주를 내려 줄 뿐이었다. 즉, 임금의 기영회 참석은 상정하지 않은 정황을 알 수 있다.

기영회 개최가 최고 절정기를 맞이할 때는 성종연간이다. 이를 주도하였던 한명회는 연회 개최 명분으로 세종연간의 기영회를 인용하였다.<sup>37)</sup>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임금의 재가를 통해 이루어진 가장 앞선 기영회는 세종연간(1433년 1월 20일)에 이루어진 것이며, 한명회도 이를 근거로 명분을 세웠던 것이다. 만약 태조

가 기로소에 입소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면, 연회 개최 시 임금의 재가를 얻고자 했던 신료들은 분명 태조연간의 기로소 입소 관련 내용을 명분으로 하였을 테지만, 이러한 내용은 선조연간까지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기로소 서루에 태조의 어필이 남아있었다면 연회 개최 시 태조에 대한 의례가 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로소 서루에 대한 어떤 의례도 확인되는 것은 없다. 임진왜란 이전 시점에 조선 왕실과 사대부들에게서 태조의 기로소 입소나 기로소 서루에 태조의 어필이 남아있었다는 인식은 찾아볼 수 없다.

### 4. 임란 이후의 기로소와 태조 관련 고사 등장

조선 전기의 기로소는 임진왜란 때 전소된 것으로 보인다. 기로소의 복구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선조실록』 기사 중 1603년(선조 36) 5월 10일에 병란으로 폐지된 기로소 연회를 시행하자는 신료의 말에 동의하여, 선조가 기로소 회연처(耆老所會宴處)에 술을 내리는 대목이 확인된다.<sup>38)</sup> 이를 통해 볼 때 전란 후 1603년경에는 기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사의 하단에 사신(史臣)이 첨부한 내용도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변란 이후 10년이 지나도 아직 종묘와 사직은 빈터로 있고, 임금도 여염에 거처하고 있는데, 한낱 말단의 형식적인 것만 일삼아 안일하게 연회나 베풀며 술 마시는 것을 태연히 여기고 있으니 나라의 형세가 약화된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sup>39)</sup> 당시의 기로연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선조연간부터 기로소에서의 연회 자체가 매우 적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의 인조연간 기사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1630년(인조 8) 10월 15일 『인조실록』 기사에 따르면, 지중추부사 서성(徐滄)이 아뢰길, 태조가 기영회에 행차하여 보축(寶軸)에 서명하신 일이 이제까지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

32) 『연산군일기』 43권, 연산 8년 3월 3일 을해 1번째 기사 : ○乙亥/議政府啓: “大射禮時, 旣行會禮宴, 今日又設耆英會, 上恩至渥, 明日又賜床破費。 臣等聞, 日本國王使臣將至, 來春天使亦來, 國家固當省費。 且民間貧困, 愁嘆不絕, 而群臣燕飲豈可乎? 請停之。 且前此賜床, 或有分賜各第之時。” 不聽。

33) 최경현, 앞의 책 2021, 198쪽

34) 『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 12월 10일 병진 1번째 기사 : ○丙辰/賜宴宗親于時御所, 文武二品以上于議政府, 三品堂上于禮曹, 耆老宰樞于耆老所 <후략>

35) 성종연간에 기영회(기로회) 장소가 훈련원으로 바뀐 것은 한명회가 주도한 연회가 70세 미만의 현직 고관까지 포함되면서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최경현, 앞의 책, 2021, 196쪽).

36) 기술한 관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최경현, 앞의 책, 2021, 194쪽).

37) 각주 30번 참조.

38) 『선조실록』 162권, 선조 36년 5월 10일 을축 3번째 기사 : ○判中樞府事具思孟等。【崔滉 李齊閔】 啓曰: “我朝, 自國初, 設立耆老所, 特賜臧獲魚箭等物, 蓋使年老宰臣, 得以每歲宴會, 以娛餘年, 實二百年來流傳盛事也, 兵亂以後, 久廢不講。 今者幸值國事稍定, 邊警亦息。 茲以來十一日, 欲依舊例, 邀請三公, 略行故事, 以無忘祖宗朝設立本意。 敢啓。” 傳曰: “甚好。” 仍傳曰: “耆老所會宴處, 賜酒一等。”

39) 『선조실록』 162권, 선조 36년 5월 10일 을축 3번째 기사 : <전략> 史臣曰: “經變十年來, 廟社尙爲丘墟, 君父猶御閭闔。 此正君臣上下, 臥薪嘗膽, 討賊復讐之圖。 生聚教訓之是急, 而曾不是思, 徒事文爲之末, 儉安宴飲, 恬不爲怪, 國勢削弱, 固其所也。 亦何能扼衰替, 而雪深讐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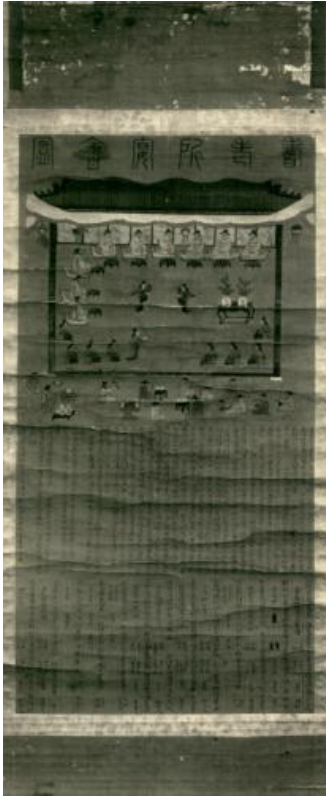


그림 1. 「기로소연회도(1621년)」, 「기로소연회도」 시문에 -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하며, 임진년 이후 수십 년 동안 네 차례만 행사가 이루어졌을 정도로 제도 문물이 공허해졌다고 언급하며 기로회의 재개를 간청하는데, 결국 이는 시행되지 못한다.<sup>40)</sup>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수십 년간 네 차례만 기로회가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태조의 기로소 연회 참석과 기로소 서루에 대한 고사가 기로연회 재개의 명분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상술한 태조의 기로소에 대한 고사가 등장하는 가장 이른 사례는 1621년(광해군 13)에 작성된 「기로소연회도」 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영회 후에 참석자들이 「기

로소연회도」<sup>41)</sup>를 제작하여 나누었는데, 이때 심희수(沈喜壽)가 지은 시의 서문에 태조가 친필로 기로소 서루(西樓)에 이름을 남겼는데 임진왜란 때 병화로 소실된 내용을 적고 있다.<sup>42)</sup> 하지만 심희수도 직접 본 내용은 아니고, 해평(海平, 경북 선산군 해평면) 사람 윤근수(尹根壽)<sup>43)</sup>의 「기로소계병(耆老所契屏)」 서문에 언급되

40) 『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10월 15일 경신 2번째 기사 : ○知中樞府事徐渚啓曰：“國朝耆老所，乃古者上庠、東膠之遺意。太祖大王因前朝已行之規，而恩典加隆，臨幸耆英之會，題御諱於寶軸，至今傳以爲美談<중략> 壬辰以後，典章蕩然，猶尋故事，以寓存羊之意，數十年來，設會者凡四度。豐呈之後，即擬設行，而荐遭荒歲，又值皇城被圍之變，迄未之果。請於是月，邀諸大臣設宴，以成優老之典。” 上命賜一等樂以榮之，適以遷陵習儀，竟不行。

41) 「기로소연회도」는 1930년대 당시 충북 괴산 소수면 몽촌리의 柳海崙씨가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1621년 기영회에 참석한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 유근(柳根)의 소장품이었다(中村榮孝, 앞의 책, 1933, 24쪽). 이 「기로소연회도」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유리건판사진(등록번호 SJ0000000376, 1933년 촬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42) 耆英之有會尙矣唐宋高賢結社流名之後延及我東方風流諸彥踵美而傳芳者厥有譜牒逮于本朝益恢張而侈大之春秋令節宴遊聯翩不但在下自相娛樂乃至君上亦與焉其扶獎錫賚之典靡所不備觀於太祖大王留御諱親筆於本所西樓上亦可驗矣不幸各樣舊蹟蕩然淪失於壬辰兵火尹海平子固相公(尹根壽)之序略已及之矣經亂三十年來庶事草創設會僅五六遭而上年與今年冬皆不以宴日上聞蓋以軍興多事及邊警益急也豈非大可惜哉然近歲社員之濟々前古所未有吁亦異矣。(中村榮孝, 앞의 책, 1933, 19쪽에서 인용)

43) 윤근수(1537~161년)는 홍문관부교리를 비롯하여 대사성, 공조참판

어 있었던 내용을 다시 인용하였다<sup>44)</sup>.

이후부터 기로소 연회를 재개하고자 하는 건의를 할 때 언급되는 것이 태조의 기로소 연회 참석 내용이다. 1639년(인조 17) 3월 18일의 실록 기사를 보면, 태조가 기로소 연회에 친히 임하시어 어휘를 손수 쓰고 본 기로소에 간직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sup>45)</sup> 태조의 기로소 연회 참석 고사는 기로소 연회의 재개 촉구를 위한 레토릭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당시 인조연간 신료 중에는 기로소 연회의 정례적 재개 요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1639년(인조 17) 3월 21일에 장령 홍무적이 아뢴 내용으로, 기구(耆舊)의 여러 노신들이 마음을 다해 나라 근심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영화를 자랑하는 일을 다시 설치하기를 스스로 청하니, 보고 듣는 사람치고 누가 궤이히 여기고 놀라지 않을 수 있겠냐고 하며, 기로소의 당해 당상을 무겁게 추고해 달라고 건의한다.<sup>46)</sup>

상기한 상황과 같이, 임금의 재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기로연회가 과거와 같이 정례적인 개최는 고사하고, 특별히 부탁한 건의에도 잘 열리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회 재개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료들이 인용하기 시작한 것이 태조의 기로소 연회 참석 및 태조의 어휘가 기로소에 남아있었다는 내용이었다.

## 5. 숙종의 기로소 입소와 영수각의 신축

### 5-1. 숙종의 기로소 입소 논의와 쟁점

숙종의 기로소 입소는 1719년(숙종 45) 1월 10일에 전(前) 직장(直長) 이집(李楫)이 세자(훗날 경종)에게 건의하면서 시작된다. 입소 명분은 태조가 갑술년(60세, 태조 3년인 1394년)에 기로소에 들어가셨고, 이 내용이 국사(國史)와 『선원보략(璿源譜略)』에 기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든다.<sup>47)</sup> 그러나 같은 달 12일에 도제조(都提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44) 각주 42번 참조.

45) 『인조실록』 38권 인조 17년 3월 18일 을해 2번째 기사 : ○耆老所堂上右議政沈悅等上劄曰：耆老所自祖宗朝創設，而我太祖大王親臨賜宴，手寫御諱，藏之本所。<후략>

46) 『인조실록』 38권, 인조 17년 3월 21일 무인 2번째 기사 : ○掌令洪茂績啓曰：“耆老所乃國家太平時，優老之盛典也。當此主尊臣死之日，加以歲遭凶荒，至於祭享、御供，亦皆減損。耆舊諸老，不思竭心憂國，而尊己誇榮之舉，自請復設，瞻聆所及，孰不怪愕？請耆老所當該堂上，從重推考。<후략>

47)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월 10일 계미 기사 : ○癸未/前直長李楫上書曰 <중략> 仍念我太祖大王，乙亥誕降，而至甲戌入耆所，此在國史，亦錄《璿源譜略》，至今斑斑可考，則豈非帝王之盛節，後嗣之可監者哉？<후략>



調) 이이명(李頤命)은 태조가 60세에 기로소에 입소한 것은 전해지는 말만 있고 믿을만한 명문(明文)이 없다고 고한다. 다만, 고 심희수가 기로소선생안의 서문을 지을 때 태조가 어필로 서루(西樓)에 제명하였다는 일을 기록한 부분과 고 김육(金堉)의 서문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된 점, 『선원보략(璿源譜略)』<sup>48)</sup>에도 상술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 있는 점을 들면서, 임진왜란에 기로소(서루)가 불타 알 수가 없다는 의견을 제기한다.<sup>49)</sup>

숙종은 사실 확인을 위해 춘추관 당상과 낭청을 강화도 사고로 보내 역대 실록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에 대한 보고를 지춘추(知春秋) 민진후(閔鎭厚)가 세자에게 먼저 하는데, 『태조실록』부터 『세종실록』 기해년(1419년)까지의 34책 모두를 상세히 보았지만 태조의 기로소 입소와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고한다.<sup>50)</sup> 다시 아뢰길, 군주가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은 진실로 이전에는 없던 성대한 일이나 군하의 기로소에 군주가 낮추어 들어가실 수는 없고, 아래에서 군주가 들어가시도록 청하는 것도 외람된 일이라 하며, 기로소에 임금이 입소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편전에서 진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sup>51)</sup> 이에 세자는 명백히 상고해 보았다고 채차 물어보는데, 민진후는 검열(檢閱) 박사성(朴師聖)과 함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상고하였고 빠뜨릴 리가 없다고 대답하며, 태조의 전례가 확인되지 않으니 숙종의 기로소 입소 또한 갑작스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한다.<sup>52)</sup>

관련 보고를 받은 숙종은 『선원보략』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 세자가 청하였고, 신하들도 이를 아뢰어 원래

협의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교(下敎)하였는데, 실록에 의거할 만한 전례가 없다고 하니, 사체(事體)가 입록(入錄)할 수 없겠다고 하명한다<sup>53)</sup>. 이후에도 세자와 신료들의 재차 기로소 입소 건의가 있었지만 숙종은 태조의 기로소 입소가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sup>54)</sup>

그러다가 같은 달 26일에 왕자 연잉군과 연령군이 여러 종신을 거느리고 아뢰길, 국초에는 사관들이 소략하게 일을 기록한 것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일을 실록에서 상고하고자 했을 때 찾지 못해 근심했던 일이 있었으며, 이번 일도 누락된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심희수의 기록이 신빙성 있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선조 말년에도 태조의 고사를 뒤쫓아 기로소 입소를 계승하려 하였으나 미처 거행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며 숙종의 기로소 입소의 정당성과 의의를 강조한다.<sup>55)</sup> 이에 숙종은 왕좌와 신료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로소 입소를 허락<sup>56)</sup>한다.<sup>57)</sup>

## 5-2. 숙종의 기로소 입소와 영수각의 건립

숙종의 기로소 입소가 결정된 다음 날인 1월 27일부터 기로소선생안을 봉안할 곳을 수리하고 책자를 새로 만들어 장황하는 등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세워진다.<sup>58)</sup> 다음 날인 28일에 숙종은 태조가 기로소에 입소

53)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월 22일 을미 3번째 기사 : <전략> 上曰: “《璿譜》既有所記, 而世子請之, 卿等亦有所達, 故頃以元非可嫌之事爲敎, 而今考實錄, 無可據之例, 則事體不可入錄矣. <후략>

54)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월 24일 정유 3번째 기사 : <전략> 世子答曰: “聖上念余喜懼之情, 許入者所, 不勝歡忭矣, 昨於筵中, 以信史無徵, 遽寢成命. 歡忭之餘, 缺然當如何? 更即竭誠申請, 而輒以不載實錄不許, 缺望愈甚, 抑鬱度日矣.” 翌日, 東善君 炳, 東昌君 烜等, 亦上書陳請, 世子答之如機等之批.

55)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월 26일 기해 5번째 기사 : ○王子延初君 吟, 延齡君 田, 率諸宗臣, 聯名上疏, 有曰: <전략> 臣等嘗聞國初制度草創, 史官記事甚多踈略, 故在前國家有事, 考出實錄, 而其於國初事, 每患無徵云. 此事亦或見漏, 固無足怪, 而故相臣沈喜壽, 及仕於壬辰亂前, 則序文必據其耳目所觀記, 非若傳信, 傳疑之比. 此外名臣長德記述之語, 亦多有之, 而其爲文獻之可徵, 孰有過於先生案者乎? <중략> 臣等又嘗伏聞, 宣廟末年, 亦擬待六旬之至, 追踵太祖故事而未及焉, 臣僚逮事者, 無不追恨云. 今幸聖壽靈長, 已臻六旬, 而盛事終亦不舉, 則豈不爲國家之欠典乎? <후략>

56)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월 26일 기해 5번째 기사 : <전략> 上答曰: “此事元非可嫌者, 既允世子之請矣. 厥後還寢成命, 以其不載實錄也. 世子之缺然申請, 愈往愈懇, 而爾等及多宗之言, 亦如此, 仍又思太祖西樓書諱之事, 載於沈喜壽者所先生案重修序文中. 今茲文字, 決非杜撰. 且宣祖朝去古未遠, 而晚年亦嘗擬待六旬之至, 追踵太祖故事, 則尤爲明白, 而疏中竝與太祖盛事而永泯於來世之云, 甚是. 依前下敎舉行焉.”

57) 임부연, 앞의 책, 2022, 64쪽에서도 숙종의 기로소 입소 시의 논쟁과 정치적 상황에 대해 언급하였다.

58)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월 27일 경자 1번째 기사 : <전략>

48) 1674년(현종 15)에서 1680년(숙종 6) 사이에 종부사에서 제작한 왕실 족보이다.

49)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월 12일 을유 기사 : <전략> 六十入者所, 雖有流傳之說, 未有可據之明文, 而其後故相臣沈喜壽作者老所先生案序文, 記御筆題名西樓之事, 故相臣金堉序文, 亦有所記, 《璿源譜略》, 亦記其事. 且聞本所流傳之言, 則西樓題名處, 設紗籠奉安矣, 壬辰亂後, 湮沒無存云. <후략>

50)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월 22일 을미 2번째 기사 : ○諸承旨入對於東宮, 知春秋閔鎭厚同入. 蓋爲考出太祖入耆社時事實, 朝廷遣春秋館堂上, 郎廳, 考江華所藏實錄, 鎭厚奉命往考還, 求對也. 鎭厚曰: “臣到史閣, 奉出《太祖實錄》, 自初卷至世宗己亥凡三十四冊, 詳細考閱, 而終無見出處, 不免空還, 不勝悚歎. 頃日有節目議定之命, 而實錄既無可據者. <후략>

51)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월 22일 을미 2번째 기사 : <전략> 第以臣之愚見, 人君之入耆所, 實是無前盛事, 別設一所, 容或可也, 而不可降入於群下之耆社. 至於自下請入, 尤涉猥越矣. 以實錄所載見之, 或有大臣賜宴之時, 或有承旨, 六曹賜宴之時, 又有政府, 百官賜宴之時. 今若稍待日暖, 進宴于便殿, 則似好矣. <후략>

52)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월 22일 을미 2번째 기사 : <전략> 世子曰: “明白考見乎?” 鎭厚曰: “臣與檢閱朴師聖, 晝夜不息, 同爲考見, 安有落漏之理乎? 茲事有難倉卒決定, 稟于大朝, 更下傳敎, 然後禮官當舉行節目矣.” 世子曰: “唯.”

후 계장(几杖)을 만들었던 일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며 해조(該曹)에서 관련 일을 처리하라 하명하는데, 예조에서는 말하길 전혀 듣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으나 하명하였기에 책자(冊子)를 봉진할 때 계장 또한 만들어 들이겠다 한다.<sup>59)</sup> 기로소에 봉안할 어첩 제작과 관련한 기사를 보면, 도제조 이이명은 태조의 기로소 입소는 문적(文籍)이 명백(明白)하지 못하고, 사가(私家)에서 기술한 문자만 빙고(憑考)하였으므로 단서가 마땅치 않기에, 임금께서 오늘날 성거(盛舉)를 기록해 영구히 유전(流傳)될 수 있게 하는 안을 아뢰다. 그리고 발문은 대제학(大提學) 김유(金樛)가 작성해 바치도록 한다.<sup>60)</sup>

2월 11일에는 기로소에 봉안할 어첩 명칭이 「기로소 어첩」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영의정 김창집이 말하길 어첩은 기로소 서루 구감(西樓舊龕)에 봉안해야 하는데 감실 벽이 허물어져 봉안할 수 없는 상태임을 고하고, 특별히 한 누각 건물을 종부시(宗簿寺)의 선원각(璿源閣)처럼 지어서 봉안하고자 고했는데, 숙종이 윤허한다. 그리고 이날 어첩이 기로소에 봉안된다.<sup>61)</sup> 다음 날인 2월 12일 숙종은 왕세자 및 백관 거느리고 기로소에 입소한다.<sup>62)</sup>

같은 해 6월 9일에 기로소 영수각(靈壽閣)이 완성되었는데, 공사 감독은 당상 임방(任墜) 및 강현(姜覲), 상량문 제술관은 이관명(李觀命), 편액 서사관은 신임(申鎰)이었다.<sup>63)</sup> 그리고 같은 달 24일에는 기로소 당상 등이 새로 건립된 영수각에 다시 어첩을 봉안하였다.<sup>64)</sup>

但節目之間，無可考據，耆老所先生案奉安處，爲先修理，新造冊子，精加粧緘，另擇吉日，承旨及本所堂上一員，奉詣上進，當以御筆，書以尊號。 <후략>

59)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1월 28일 신축 1번째 기사 : ○辛丑/上下教曰: “太祖大王入者所後，几杖造入之事，至今流傳。此一款，令該曹稟處。” 禮曹言: “臣等孤陋，全無聞知矣。聖教如此，當於冊子奉進時，几杖亦爲精造以入。” 上可之。

60)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2월 10일 계축 2번째 기사 : <전략> 頤命又言: “太祖大王入者所事，實是千古盛事，而文籍不明，只憑私家記述文字，到今不能無疑晦之端。今若自上親自記實，追揚聖祖故事，且記今日趾美之盛舉，則可以流傳永久，<중략> 遂命大提學金樛撰進。

61)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2월 11일 계축 2번째 기사 : <전략> 昌集言: “姑當奉安於西樓舊龕，而龕壁頹廢，不堪久奉。請別構一閣，如宗簿之璿源閣，以奉之。” 上許之。昌集又請於誕日，自本所封進物饌，上可之。於是，承旨、史官，與耆老所堂上，陪御帖，奉安于耆所。 <후략>

62)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2월 12일 을묘 1번째 기사 : ○乙卯/以上入耆老所，王世子率百官陳賀，頒赦頒教。 <후략>

63)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6월 9일 경술 1번째 기사 : ○庚戌/耆老所靈壽閣成。敍監董勞，堂上任墜、姜覲、上樑文製述官李觀命、扁額書寫官申鎰等，命賜馬。

64)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6월 24일 을축 1번째 기사 : ○乙丑/耆老所堂上等，齊進靈壽閣，奉安御帖。

상술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 숙종의 입소 전까지 기로소에는 임금을 맞이하거나 어첩 등의 왕실 상징물을 보관할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고, 숙종의 입소가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어첩을 봉안할 봉안각을 세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기로소의 어첩봉안각으로 건립할 건물의 모범이 된 것은 종부시 선원각임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종부시 선원각은 왕실의 어첩과 어제(御製), 어필 등을 보관하던 건물이었다. 이에 기로소에서 어첩을 봉안하기 위한 새로운 봉안각으로 종부시 선원각이 인용된 것을 알 수 있다.

## 6. 영조연간 기로소 운영과 영수각에서의 의례

### 6-1. 기로소에서 이루어진 임금의 숙배

영조연간은 숙종 이후 기로소에 대한 왕실 의례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영조 또한 기로소에 입소하기에 주목이 된다. 특히 군하의 신료들에게 상징적 공간이었던 기로소에 임금이 직접 배례를 시작한 것은 영조연간부터이다.

1736년(영조 12) 3월 18일에 영조가 출타 후 돌아오다가 길 왼쪽의 고각(高閣)을 바라보고 무엇인지 물어보니 그것은 기로소 영수각이었고, 기로소에 들어가 둘러보게 되었다. 이때 영수각에 임금이 배례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료들에게 묻는데,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자 영조는 종부시 선원각에도 숙배를 하는 예절이 있고 영수각은 어첩이 봉안되어 있으니 배례를 하겠다 하고, 네 번 절한 뒤에 봉안된 어첩을 친견한다.<sup>65)</sup> 이를 계기로 영조는 여러 차례 기로소 영수각에서 배례를 하는데, 임금이 기로소에서 배례하는 의례는 영조연간부터 시작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로소 영수각에 숙종이 제작한 어첩이 봉안되어 있는 점, 그리고 기존에 왕실 관련 어첩 등이 모셔져 있던 종부시 선원각에 대한 배례 관례가 있었던 점이 명분이 되었다. 이후에도 영조는 기로소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보이며, 본인 또한 기로소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평소 소원 중 하나였음을 말하였다.<sup>66)</sup>

65) 『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 3월 18일 임자 1번째 기사 : <전략> 駕回，望路左高閣問之，乃耆老所靈壽閣也，遂命歷瞻。奉朝賀閔鎮遠、判府事李台佐祇迎洞口。上御耆社大廳，時，原任大臣及諸承旨玉堂入侍。上問靈壽閣當拜耶，諸臣議不一，上曰: “宗簿寺璿源閣有肅拜之禮，是閣奉御帖，不可不拜。” 由夾門入，行四拜於閣庭，諸臣亦四拜。上坐閣內前軒，命奉出御帖櫃，鎮遠、台佐以耆社臣，立於閣內。上出帖敬玩，俯伏感涕 <후략>

66) 『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 1월 11일 병인 1번째 기사 : <전략> 上曰: 予無他願。惟三件事而已。朝廷無黨，百姓無事，至樂也，追述故



6-2. 영조의 기로소 입소와 영수각에서의 의례

영조의 기로소 입소 관련 논의는 영조가 51세가 되던 해인 1744년(영조 20) 7월 29일에 여은군(礪恩君) 이매(李梅)의 상서로부터 본격화된다. 이매의 상서에 따르면 숙종은 육순이 아닌 59세에 기로소에 입소하였는데, 영조의 춘추가 51세이니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육순을 바라보는 것은 같으므로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건의하게 된다.<sup>67)</sup> 이에 영조가 말하길, 기로소 입소는 지극히 소원해 온 것이나 지금은 너무 이른데, 노쇠하여 고질병을 앓고 있고, 속히 59세가 되어 선조의 고사를 따르게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바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하교에 신료들의 말이 수백 마디에 달했다고 한다.<sup>68)</sup> 아직 시기는 이르나 기로소에 입소하고 싶은 영조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영조의 기로소 입소와 관련한 논의에서도 신료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나타난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는 성상의 기로소 입소는 곧 몸을 낮추고 굽히는 것이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님을 말하면서, 영조가 이제 선 살을 넘겼는데 갑자기 기로라는 칭호를 군부에게 더하겠나 하면서 인하된 마음은 진실로 이를 참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왕실에서는 태조와 숙종만이 기로소에 입소하였는데, 선 살을 넘기셨던 태종과 세종, 세조, 중종, 선조도 모두 기로소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선군들께서도 행하지 않은 바임을 강조하며 6~7년을 뒤에 의논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 고한다.<sup>69)</sup> 상술한 바와 같이 조정에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지만, 영조의 기로소 입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된다. 같은 해 8월 26일, 영의정 김재로는 기사당상(耆社堂上)을 대동하여 어전회의에 참석해 고하여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사실상 결정하게 한다. 먼저 선원전에 전알을 하

事, 書名耆社, 素願也, 元良漸長, 委以國事, 釋負就閒, 苦心也. <후략>

67) 『영조실록』 59권, 영조 20년 7월 29일 갑진 5번째 기사 : <전략> 我肅宗大王寶齡五十九, 而因諸臣疏請, 踵成太祖之舊例, 適追西樓之故事. 我殿下春秋逾五望六. 肅廟既未及太祖六旬之年, 而入於耆社, 則我肅考靈壽之五十九, 我殿下春秋之五十一, 其間雖似差也, 望六旬則一也. <후략>

68) 『영조실록』 59권, 영조 20년 7월 29일 갑진 5번째 기사 : <전략> 上曰: 此事, 予曾以穆廟待六旬之故事, 陳章於昔年, 則此亦非予可謙讓者, 卽其至願. 然而今則可謂太早也. 年老病痼, 只願速得五十九歲之壽, 以追先朝故事, 而何可望乎? <후략>

69) 『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 8월 11일 을묘 2번째 기사 : <전략> 在魯曰: "向日宗臣之疏請入耆社, 而大抵人君之入耆社, 乃降屈也, 非榮耀也. 群下頌禱之忱, 方期千萬年. 今聖壽纔踰五十, 豈可遽以耆老之號, 加之於君父乎? 臣等之心, 誠有所未忍也. 我朝列聖, 惟太祖、肅廟入耆社. 而至若太宗、世宗、世祖、中宗、宣祖五六聖寶壽, 亦踰五旬而皆不入, 此所謂吾先君莫之行也. 且殿下前後屢下不忍聞之教, 爲今日臣子, 豈敢以耆老二字, 歸之於聖上乎? 姑待六七年讓之未晚也. <후략>

고, 다음에 기로소에 행차하여 전배한 뒤에 어침에 글을 쓰는 것으로 의례의 큰 틀을 만들고 이를 후대에 전례로 삼게 한다.<sup>70)</sup> 이후에 지평 박성원(朴聖源)은 영조의 기로소 입소와 관련하여, 고사에서 태조를 따르면 60세에, 숙종을 따르면 59세가 입소의 때로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며 반대하였는데, 이때 고한 여러 내용으로 인해 귀양을 가게 된다.<sup>71)</sup> 여기에 더해 당시 소신 발언을 한 신료들도 잇달아 귀양 가는 사태가 벌어진다.

영조의 기로소 입소는 9월 9일에 이루어진다. 앞서 8월 26일에 계획한 방침에 따라 영조는 세자를 거느리고 창덕궁 선원전을 배알한 다음에 기로소로 행차하였다. 영수각 뜰의 동쪽에서 4배례하고 영조가 영수각으로 올라 서쪽을 향해 어칸 기둥 사이(楹內)에 앉고, 세자는 영외(楹外)에 앉았다. 시임대신과 원임대신, 기로제신, 예관, 승지, 사관은 계단 위에서 자리하였다. 어침은 기사당상관 신사철(申思喆)이 영수각 감실을 연 다음, 예조판서 이종성(李宗城)과 예방승지 조명리(趙明履)가 어침을 받들어 꿇어앉아 어전에 올랐다. 영조는 어침에 '지행순덕영모의열왕(至行純德英謨毅烈王)'이라고 썼다. 예관이 궤장(几杖)을 받들어 승지에게 주고, 승지가 이를 받아서 올렸다.<sup>72)</sup>

상기한 내용을 통해 기로소 영수각에서 사람들의 동선, 사람들이 자리하는 위치 및 좌향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특히, 영수각 가운데 칸의 감실을 둘러싼 퇴칸이 봉안 및 열람 등의 의례를 위해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퇴의 위치별 임금 및 세자의 좌석, 신료들의 배석 및 동선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로소 영수각에서의 의례는 영수각의 조영 모범이었던 종부시 선원각에서 의례가 인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종의 기로소 입소 때도 영조연간의 의례를 인용하게 된

70) 『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 8월 26일 경오 1번째 기사 : <전략> 在魯又以聯節事稱謝曰: "殿下欲追踵舊典, 有如不及之歎, 臣等所共悶迫者, 又以過慮爲教. 今日欲爲稟行, 故率耆社堂同人矣.<중략> 上曰: "事無大小, 必告東朝而後可行也. 先展謁瑤源殿, 仍詣靈壽閣展拜後書諸帖, 此後以此爲例可也.<후략>

71) 『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 8월 29일 계유 3번째 기사 : ○竄持平朴聖源于南海縣. 聖源詣臺, 陳十一啓. 其一曰: 聖上入耆社之舉, 實始於太祖朝, 而我肅考繼之, 則今日之所當遵者, 其不在於太祖、肅考已行之規乎? <중략> 臣則曰行之於癸酉, 然後始可曰踵太祖之故事也, 行之於壬申然後, 始可曰踵肅考之故事也. 臣民願祝, 正在於斯, 請姑寢入耆社之命.<후략>

72) 『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 9월 9일 계미 1번째 기사 : ○癸未/上率世子, 詣昌德宮, 謁瑤源殿, 仍幸耆老所. 就靈壽閣庭東, 行四拜禮, 陞御閣內西向, 坐楹內, 王世子坐楹外. 時·原任大臣、耆老諸臣、禮官、承、史, 侍於階上. 耆社堂上申思喆進開閣內龕室, 禮曹判書李宗城、禮房承旨趙明履奉御帖, 跪進于前, 上親書于帖曰至行純德英謨毅烈王. 禮官奉几杖, 以授承旨, 承旨受而進之.<후략>

다.

### 6-3. 영조·정조연간의 기로소 운영

기로소 입소 후에도 영조는 기로소 영수각에서의 진배를 이어갔으며, 기로소를 자주 찾았다. 그리고 유지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754년(영조 30) 9월 초2일에는 영수각의 양상도회와 어첩봉안감실의 내외부에 대한 단청 수리를 하였다.<sup>73)</sup>

『영조실록』 1765년(영조 41) 3월 9일 기사를 보면, 괴원(槐院, 승문원)과 국자감(國子監)에서 각각 1명씩 수직관을 뽑아 날마다 돌아가면서 기로소에 직숙(直宿)하게 하였는데, 이는 영수각에 어첩이 봉안되어 있기 때문이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sup>74)</sup> 상기 기사를 통해 기로소 내 수직관직소가 영조연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영조 이후의 상황을 보면, 정조연간 초기에는 기로소에 할당되어 있던 전지(田地)를 절수(折受)하였고<sup>75)</sup>, 정조 말년에도 기로소의 면세전이 1천결이나 되어 과다하다는 의견을 내는 등,<sup>76)</sup> 영조 때에 비하면 기로소와 거리를 두었다. 또한 『정조실록』에서는 기로소 영수각에서의 숙배 기사가 확인되지 않기에, 과거 영조 때의 기로소 위상이 정조연간에 낮아진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후의 순조나 헌종, 철종연간에도 기로소에 대한 임금의 관심은 낮았고, 앞서 정조연간 때와 마찬가지로 영수각에서의 임금의 숙배 행사는 실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 7. 기로소의 전각 구성

### 7-1. 『기사지』를 통해 본 기로소 전각

선조연간 이후에 재건되어 숙종과 영조, 고종연간에 이르는 동안의 기로소 내 전각 변천의 전모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숙종연간에 영수각이 신설되며 정비된 기로소는 영조연간까지 크게 바뀌지 않고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기로소 전각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철종연간에 간행된 『기사지(耆社志)』(1849년)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sup>77)</sup> 『기사지』<sup>78)</sup>의 기로소 전각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수각(靈壽閣)은 기영관 동쪽에 있다. 숙종 때 새로 건립한 각이다. 한 칸으로 남향을 하고 있다. 중벽에 채감(彩龕)을 설치하여 봉안하였고, 채감 앞에는 분함을 설치하였다. 사면에 반 칸짜리 전퇴가 있고 난간을 둘렀다. 기단(階) 아래 네 모퉁이에는 염수분(鹽水盆)을 두었다. 높은 담장을 둘렀다. 삼문(三門)은 3칸이다. 기영관(耆英館)은 영수각 서쪽에 있고, 방 2칸, 현 6칸으로 되어 있으며 남향이다. 중벽의 감실에 「기신선생안」을 두었다. 기사도상첩봉안각(耆社圖上帖奉安閣)은 1칸이고 서사방(書使房) 2칸 반이 연결되며 동향이다. 수직관직소(守直官直所)는 방(房) 2칸 반, 현(軒) 2칸으로 되어 있으며 남향이다. 부군당(府君堂)은 2칸 반으로 되어 있으며 남향이다. 사령방(使令房)은 방(房) 1칸, 현(軒) 1칸으로 되어 있으며 동향이다. 군사방(軍士房)은 방(房) 1칸으로 되어 있으며 동향이다. 고사(庫舍)는 6칸이며 북향이다. 낙우위양소(酪牛喂養所)는 4칸이며, 주방(廚房) 2칸, 현(軒) 2칸, 주(廚) 2칸 모두 동향을 하고 있다. 대문은 1칸으로 남향이며, 그 앞에 하마비가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철종연간 기록에서의 기로소 전각 구성을 보면, 영수각과 기영관, 기사도상첩봉안각이 기로소의 중심 전각이고, 수직관직소를 비롯해 부군당, 사령방, 군사방으로 구성되는 행정 및 제향, 보위 시설물과 창고 및 주방 등의 시설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수각은 기로소 내 다시 높은 담장을 두고 삼문을 통해 출입하는 형식으로 하여, 어첩이 봉안된 영수각 영역과 기영관 영역의 2원 체제로 구성시킨 것을 알 수 있다.

기로소는 1909년(순종 2) 3월 8일에 기로소 관제가 폐지되면서 훼손되었다. 그리고 구한말 기로소 관련 사 진 자료는 미발견 상태로, 기로소의 모습은 조선시대 회화정도로 알 수 있다. 다만, 기로소 영수각을 조영 시 모범으로 삼아, 고종연간인 1904년에 의성 고운사 연수전이 세웠기에 한양의 기로소 영수각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그림 2, 그림 3 참조).

73) 『기사지』 권1의 甲編, 耆所立司, 館宇조 靈壽閣開

74) 『영조실록』 105권, 영조 41년 3월 9일 갑신 3번째 기사 : ○始命耆社守直官, 以槐院國子參下各一人, 輪日直宿, 計仕遷轉, 以靈壽閣奉御帖, 事體尊重也.

75) 『정조실록』 6권, 정조 2년 12월 17일 계유 1번째 기사: ○癸酉/耆老所, 以折受田請劃事啓. <후략>

76)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3월 28일 임진 2번째 기사: <전략> 上曰: “耆社免稅, 亦爲千結云, 亦豈不過多乎? <후략>

77) 이용운, 앞의 책, 2005, 190~193쪽에서도 『기사지』의 기록을 통한 기로소 전각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78) 『기사지』 권1, 甲編, 「館宇」



그림 2. 의성 고운사 연수전(필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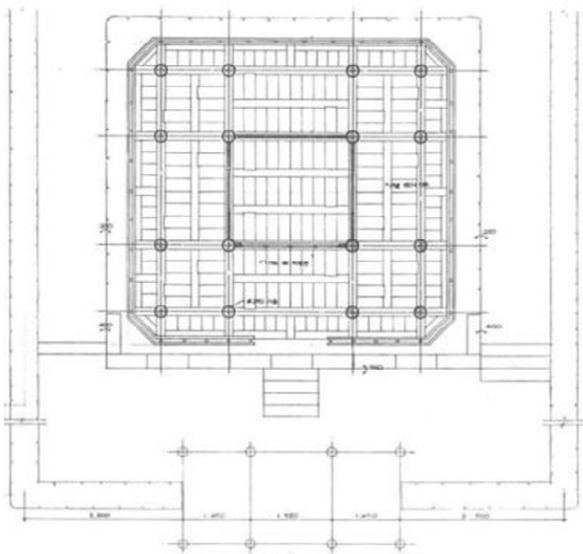


그림 3. 의성 고운사 연수전 평면도(1998년 정비도면)

### 7-2. 회화를 통해 본 기로소 전각

기로소의 전각 모습은 현전하는 기로소 행사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기로소에서 이루어진 행사 모습을 그린 행사도는 영조연간 이후부터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기사경회첩(耆社慶會帖, 1745년)」과 「기영각시첩(耆英閣詩帖, 1763년)」, 「영조을유기로연-경현당수작연도병(英祖乙酉耆老宴-景賢堂受爵宴圖屏, 1765년)」, 「영수각송(靈壽閣頌, 1765년)」, 「친림선온도(親臨宣醞圖, 1765년)」, 「임인진연도병(壬寅進宴圖屏, 1902-1904년)」이 있다. 상술한 회화 자료들을 살펴보면, 『기사지』에 기록된 기로소 중심 전각들의 모습과 어느 정도 맞아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로소 대문은 1칸으로 남향을 하고 있고 대문 양옆으로 행각이 배치되어 있다. 대문의 지붕 모습은 「기사경회첩」(1745년, 그림4 참조)에서 우진각지붕으로, 「영조을유기로연-경현당수작연도병」(1765년, 그림6 참조)

에서는 팔작지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고종연간 그림인 「임인진연도병 3첩(기영관)」(1902-1904년, 그림9 참조)에는 대문이 솟을삼문 형식으로 표현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다<sup>79)</sup>.

대문을 들어서면 전면에 기영관이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정면 4칸에 팔작지붕 건물로 묘사되어 있다. 3칸은 마루로 보이고, 서쪽의 한 칸은 창호를 설치한 방으로 보이는 공간을 두었다. 1765년에 제작된 「영조을유기로연-경현당수작연도병」의 3첩 기영관도를 보면(그림6 참조), 서쪽 방의 하인방은 3칸 마루의 여모 중방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고 함살아궁이로 보이는 시설이 표현되어 있기에 바닥에 온돌이 시설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기영관 마당의 동측 편에 문을 두고 있는데, 이 문은 삼문으로, 영수각 영역으로의 출입문이다. 삼문의 지붕은 우진각지붕으로 보인다. 동측 문을 들어가면 박석을 깔 참도가 3줄로 나 있는데, 영수각 마당 중심에서 북측으로 90도 꺾여 영수각으로 이어진다.

참도는 가운데 어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1줄씩, 총 3줄이 설치되었다. 북쪽(영수각 쪽)으로 이어지는 참도의 동측에는 판위(版位)로 보이는 시설 2기가 놓여있다.<sup>80)</sup> 참도는 영수각 기단 앞의 3개 계단으로 각각 연결된다. 영수각은 정면 3칸에 팔작지붕 건물로 묘사되어 있다. 『기사지』에 기술된 것과 같이 가운데 어첩을 봉안하는 감실을 두고 그 사방에 퇴칸을 둘렀으며 난간을 설치한 것을 알 수 있다. 감실 정면은 분합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어첩을 봉안하기 위한 별도의 감(채감)을 두었다. (「기사경회첩」(그림4)과 「기영각시첩」(그림5) 참조)

행사가 있을 때 기영관과 영수각에 차일(遮日)을 설치하였는데, 영수각 앞 판위에도 차일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기영관의 3면에는 장막을 설치한 것도 볼 수 있다. 또한 임금의 기로소 입소 시에는 영수각의 전면에 보계(補階)를 설치하였던 것도 확인할 수 있다(「기사경회첩」(그림4)과 「기영각시첩」(그림5) 참조). 고종연간 그림인 「임인진연도병 3첩(기영관)」(그림9 참조)에서는 기영관 앞에도 보계를 설치한 모습을 볼 수 있다.

79) 고종의 기로소 입소에 맞추어 정비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정문을 솟을삼문 형식으로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80) 「기영각시첩(1763년)」에는 판위가 한 기만 표현되어 있는데, 「기사경회첩(1745년)」이나 「영조을유기로연-경현당수작연도병(1765년)」, 「친림선온도(1765년)」에는 2기의 판위가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영수각 앞뜰의 판위는 2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 더 신빙성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기사경회첩(1745년)」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7. 「영수각송(1765년)」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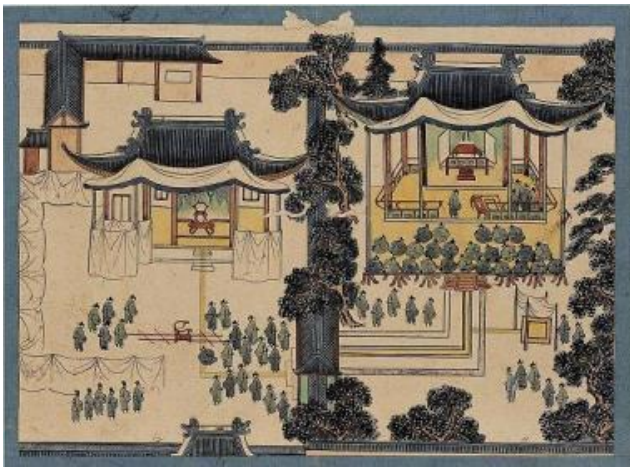


그림 5. 「기영각시첩(1763년)」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그림 8. 「친림선온도(1765년)」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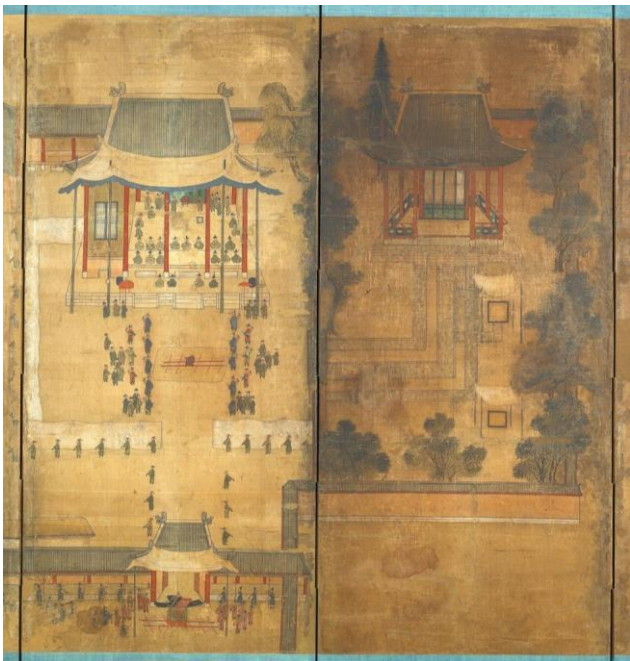


그림 6. 「영조을유기료연-경현당수작연도병(1765년)」, 2첩(기영관도)과 3첩(영수각도)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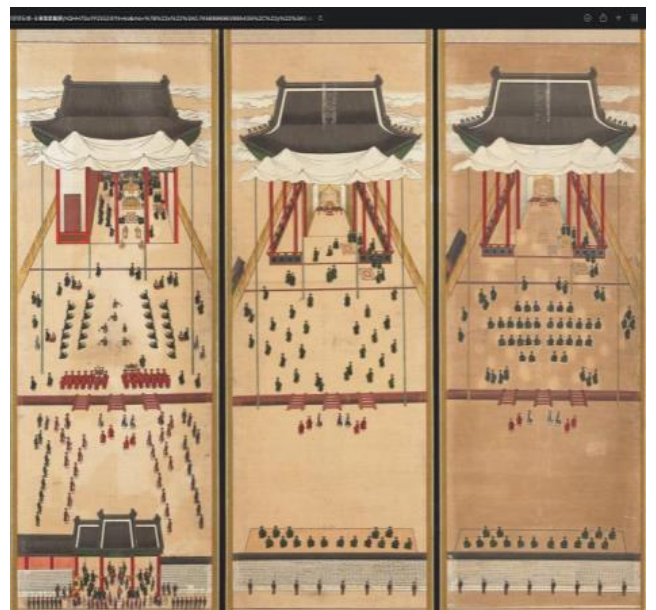


그림 9. 「임인진연도병(1902~04년)」, 1-2첩(영수각), 3첩(기영관) - 국립국악원 소장

8. 기로소 영수각의 조영 모범

8-1. 종부시의 연혁과 숙종연간의 선원각

숙종연간에 기로소 영수각을 조영할 때 모범으로 삼은 것은 종부시의 선원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종부시에서 왕실의 상징적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설치한 건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392년(태조 1) 7월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 왕실 친속의 보첩(譜牒) 제작과 관리 및 왕실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전중시(殿中寺)를 두었고,<sup>81)</sup> 1401년(태종 1) 7월에 이루어진 관제 개편 때 전중시를 종부시(宗簿寺)로 바꾸게 된다.<sup>82)</sup> 1405년(태종 5) 3월에 육조의 직무 분담 및 소속 아문을 정하면서 종부시는 이조(吏曹)에 속하게 된다.<sup>83)</sup> 그 위치는 여러 차례 옮겨졌는데, 15세기 후반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한성부 정선방(貞善坊)에 있었다가, 16세기 초중반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진장방(鎭長坊)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 고종연간에는 종친부에 통합되었고 돈화문 앞에 자리하게 되었다. 조선 전기부터 말기까지 종부시로 일관되게 불렸지만, 정조연간에는 종정시(宗正寺)로 불리기도 하였다.

종부시에 언제부터 선원각이 세워졌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세종실록』에서 1429년(세종 11) 9월 11일에 신료 정흠지(鄭欽之)가 종부시 선원록각(璿源錄閣)이 협소하니 3칸을 더 세우자는 건의를 한다.<sup>84)</sup> 이를 통해 볼 때 1429년 이전 시점에 종부시에 선원록각이 세워져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원록각의 증축 논의가 있고 나서 1430년(세종 12) 11월에 종부시에는 선원전(璿源殿)이 신축되었다.<sup>85)</sup> 이후 1437년(세종 19) 2월에 종부시가 대궐 밖에 위치하고 있기에 사용 편의를 위해 선원전을 경복궁 내 문소전 북쪽 자리로 옮기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sup>86)</sup> 1438년(세

종 20) 3월부터 선원전 이건이 시작되어,<sup>87)</sup> 같은 해 5월 19일 경복궁에 이건이 완료되었다.<sup>88)</sup> 상술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종부시에는 1429년 이전에 건립된 선원록각이 있었고, 증축 논의가 있고 나서 1430년에 선원전을 건립하였으며, 1438년에 경복궁으로 종부시의 선원전이 이건된 경위를 알 수 있다.

선원전이 이건된 이후에도 종부시에는 왕실의 상징적 물품을 봉안하기 위한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 중반의 『승정원일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1655년(효종 6) 6월 3일에 우참찬 정유성(鄭維城)은 종부시 어첩봉안처가 좁고 불결하여 수 칸을 개조하고자 하였으나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각도 감영과 병영에 물자를 조달해 수리하자 건의한 내용을 볼 수 있다.<sup>89)</sup> 그리고 같은 해 10월 26일에 기존의 어첩봉안처소를 대신할 종부시의 새로운 각(閣)이 완성되었다.<sup>90)</sup> 하지만 종부시에 어첩봉안처로 새로 건립한 각이 이후 기로소 영수각의 조영 모범이 된 선원각에 해당하는지는 『승정원일기』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다.<sup>91)</sup> 1694년(숙종 20)에는 역대 임금의 어제(御製)와 어서(御書)를 봉안하기 위해 종부시에 소각(小閣)을 세우고, 어서한 「규장각」 편액을 봉안하였다는 내용<sup>92)</sup>을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의 명칭은 환장각(煥章閣)이었다.<sup>93)</sup> 즉, 종부시에는

宗簿寺西崗建璿源殿，奉安璿源錄及祖宗辟容，合於古制，但宗簿寺在關外闊閣間，地勢狹隘，似乎褻慢，理合移構。〈중략〉於宮城內文昭殿北潔淨之處，別作小殿奉安，庶無褻慢之弊。〈후략〉

87)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29일 계축 2번째 기사 : ○是月，移構璿源殿于文昭殿東北隅。

88)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5월 19일 임인 2번째 기사 : ○璿源殿成，奉安先王先后辟容及璿源錄。

89) 『승정원일기』 135책 (탈초본 7책) 효종 6년 6월 3일 병진 12월 22일 기사 : ○ 引見時，右參贊鄭維城所啓，宗簿寺御帖奉安處，狹窄不潔，故欲爲改造數間，而物力無出處，求請於各道監兵營事，前已陳達而爲之矣。各道所送甚些，不能完役，物力之不足者，令戶曹題給，何如? 上曰，言于該曹。

90) 『승정원일기』 137책 (탈초본 7책) 효종 6년 10월 26일 병자 11월 13일 기사 : ○ 成夏明，以宗簿寺都提調言啓曰，列聖御帖奉安處所，隘陋未安，故湊合物力成造之意，曾已啓稟矣。新造之閣，今已完畢，今日臣等，齊會奉安之意，敢啓。傳曰，知道。

91) 1655년(효종 6) 종부시에 새로 건립한 어첩봉안처를 선원각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조계영, 「문서 행정으로 본 적상산사고 선원각의 초기 양상」, 『고문헌연구』 vol.57, 한국고문서학회, 2020, 39쪽)

92) 『정조실록』 2권, 정조 즉위년 9월 25일 계사 2번째 기사 : <전략> 肅宗朝爲奉列聖御製御書，別建小閣于宗正寺，御書奎章閣三字揭之，而規制則未備也。〈후략〉

93) 『정조실록』 13권, 정조 6년 5월 29일 을축 2번째 기사 : <전략> 肅廟朝，嘗有意於復設古制，歲在甲戌，以御筆，大書奎章閣三字額，奉安于宗正寺之煥章閣 〈후략〉

81)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4번째 기사 : ○定文武百官之制 <중략> 殿中寺: 掌親屬、譜牒及殿內給事等事。 判事二，正三品; 卿二，從三品; 少卿二，從四品; 丞一，從五品; 直長二，從七品。〈후략〉

82)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7월 13일 경자 2번째 기사 : <전략> 殿中寺爲宗簿寺 〈후략〉

83)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일 병신 2번째 기사 : ○禮曹詳定六曹分職及所屬以聞 <중략> 吏曹所屬，承寧府、恭安府、宗簿寺、仁寧府、尙瑞司、司膳署、內侍府、功臣都監、內侍院、茶房、司饗房。〈후략〉

84)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11일 갑인 4번째 기사 : <전략> 欽之啓: "璿源錄閣狹隘，請增建三間。〈후략〉

85)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1월 22일 기미 3번째 기사 : <전략> 奉安御容及璿源錄于新構璿源殿。

86)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2월 2일 임술 1번째 기사 : <전략> 於



왕실의 상징적 물품으로 보관하기 위한 여러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로소 영수각의 조영 모범이 된 종부시 선원각은 조선왕조실록의 숙종연간 기록에 등장한다. 1713년(숙종 39) 5월 6일에 어용(御容)을 그린 소본(小本)을 종부시 선원각(璿源閣)에 봉안할 것을 신료들이 건의하는데, 특히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은 봉안 뒤에 반드시 따로 다른 실(室)을 설치하자는 의논이 있을 수 있으니, 임금의 친필 기문으로 증축이 필요 없음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를 한다.<sup>94)</sup> 같은 달 9일에 관련 하명이 내려지는데, 어용의 소본을 족자로 만들어 선원각 가운데의 봉안장(藏之璿源閣中)에 보관시키는 한편, 뒷날에 또 다른 건물을 만들어 소본을 봉안하자는 논의가 있으면 그것은 임금의 본의가 아니기에 선원각에 그대로 두게 하라 명한다.<sup>95)</sup> 상술한 기사를 통해 1713년 이전 시점에 종부시 선원각이 조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논의 대목과 하명 내용에서 종부시 선원각에 대한 대략의 모습이 추측된다. 일단 후대에 어용 소본 족자를 별도의 실(室)을 추가 설치해서 다시 봉안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는 대목에서 선원각이 상대적으로 소규모 건물이라는 점과, 선원각 가운데 한 칸에만 봉안실이 있었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종부시 선원각의 구성은 숙종연간의 기로소 영수각과 형식적으로 공통분모를 보여준다.

8-2. 외사고 선원각(선원보각)의 건축형식

종부시 선원각 이외에도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첩을 보관하던 선원각(선원보각)은 17세기 이후의 사고(史庫)에서도 건립된다. 이에 4대 사고에 건립된 선원보각의 형식이 주목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고 난 이후, 선조 및 광해군, 인조연간에 사고(史庫)가 재편·정비된다. 1627년에는 왕실 족보인 선원보첩이 강화부 사고 실록각에 봉안하였다가, 이후 별도의 선원각(선원보각)이 세워 선원보략을 봉안한다. 오대산 사고와 태백산 사고는 1629년에 선원각을 세웠고, 적상산 사고는 1641년에, 정족산 사고는 1682년에 선원각을 건립한다.<sup>96)</sup> 외사고에 세워

진 선원각의 옛 모습은 근대기의 사진 자료가 남아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10. 평창 오대산사고 선원보각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11. 봉화 태백산사고 선원보각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12. 적상산사고 선원보각 - 문화재청, 경북대산학협력단, 『4대 사고 및 조선왕조도서 보존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2013, 234쪽

그림 13. 강화 정족산사고 선원보각(우측 건물)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평창 오대산 사고 선원보각(璿源寶閣, 1629년)은 중층으로 상·하층에 처마를 구성하였고, 상부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평면을 보면, 하층의 정면과 측면은 4칸, 상층의 정면과 측면은 2칸으로 구성하고, 하층은 비워둔 고상식 창고 형식이다. 봉화 태백산 사고 선원보각(璿源寶閣, 1629년)도 중층으로 상·하층에 처마를 구성하였고, 상부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평면에서 하층은 정면 4칸, 측면 3칸으로, 상층은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구성하고, 하층은 비워둔 고상식 창고 형식이다. 무주 적상산 사고 선원보각(璿源譜閣, 1641년)은 중층이지만 상층에만 처마를 두었고,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평면은 상층과 하층 모두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구성하고, 상·하층에 모두 벽체를 두었다. 적상산 사고 선원보각은 무주 안국사로 이건되어 천불전으로 전용되어 사용 중이다. 강화 정족산 사고 선원보각(璿源譜閣, 1682년)은 단층 맞배지붕 건물로,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건물 전면부 1칸을 벽체 없이 퇴칸으로 비운 형식이다.

4대 외사고에 건립된 17세기 이후 선원보각의 모습을 살펴본 결과, 건축 형식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사고의 선원각 형식은 숙종연간의 종부시 선원각 조영에 인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94) ○壬午/都監諸臣, 率畫工入侍, 又施彩于御容遠遊冠正本。 都提調李頤命以下諸臣, 請以初寫小本, 奉安于璿源閣。 頤命曰: “奉安後, 必有別設他室之議, 親筆作記, 以示不然之意。 似好。” 上然之。 <후략>

95) 『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5월 9일 을유 1번째 기사 : ○乙酉/上以親筆, 下御製于都監。 <중략> 此本宜洗草, 而今從圖寫都監提擧大臣之言, 粧成小簇, 藏之璿源閣中, 蓋存深長慮耳。 他日若有別構一殿奉安之議, 則非予本意, 不可不知也。 <후략>

96) 조계영, 앞의 책, 2020, 39쪽



표 1. 외사고 선원보각 개요

건물명	건립	층수 및 건물 형식	평면	지붕
평창 오대산사고 선원보각	1629년	중층, 고상식	하층 정면과 측면 4칸 상층 정면-측면 2칸	팔작 지붕 (상·하층 처마 구성)
봉화 태백산사고 선원보각	1629년	중층, 고상식	하층 정면 4칸, 측면 3칸 상층 정면 2칸, 측면 1칸	팔작 지붕 (상·하층 처마 구성)
무주 적상산사고 선원보각	1641년	중층, 상·하층 벽체 설치	상·하층 정면과 측면 3칸	맞배 지붕 (상층에만 처마 구성)
강화 정족산사고 선원보각	1682년	단층, 전면부 퇴칸은 벽체 미설치	정면과 측면 3칸	맞배 지붕

종부시 선원각과 기로소 영수각의 형식은 왕실 물품(어첩)의 봉안과 열람 등의 의례를 고려한 건조물이고, 외사고 선원각 형식은 보관 기능을 중심으로 한 건물 이기에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9. 결 론

태종연간에 퇴직 고위 신료들의 지원 기관으로 설치된 전함채추소는 세종연간에 치사기로소(약칭 기로소)로 바뀌었고, 16세기 초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한양 정청방에 위치해 운영되었다. 한양의 궁 및 관부 조영시기와 맞추어 볼 때, 태조가 60세인 1394년에 기로소에 입소하고 기로소 서루에 어필을 남겼다는 고사는 성립될 수 없음도 확인할 수 있다.

기영회(기로회)는 임금의 재가를 통한 개최가 명분이 있는 회합이 될 수 있었고, 세종연간부터 임금의 재가를 통한 기영회가 시작되었다. 조선 초기 기영회는 임금의 참석을 상정하지 않은 자리였고, 임금은 술이나 안주, 음악을 내려주는 정도로 관여하였다. 기영회가 최고 절정기를 맞이한 성종연간에는 연 2회 정례적으로 기영회가 열렸고, 한명회가 주도하여 기영회를 확대시켰는데, 이때 한명회의 명분에는 세종연간의 기영회를 인용하였다. 즉, 임진왜란 이전 시점에 조선 왕실과 사대부들에게는 태조의 기로소 입소나 기로소 서루에 태조의 어필이 남아있었다는 인식은 확인할 수 없다.

16세기 이후부터 정례적인 기영회는 중단되는 일이 잦아졌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기영회에 대한 건의가 있어도 임금의 허락이 잘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영회 재개를 위한 명분으로 태조의 기로소 입소 및 서루의 고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고사는 심희수와 김육 등의 신료들이 남긴 글을 통해 전파되고, 왕실족보인 『선원보략』에도 기재된다. 숙종의 기로소 입소 시 태조의 기로소 관련 고사에 대한 진위는 쟁점이 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관련 기록을 확

인할 수 없지만, 결국 태조의 기로소 입소와 서루에 대한 고사는 기정사실화되어 숙종과 영조, 고종의 기로소 입소와 신료들의 기로연 개최의 명분이 되었다. 숙종의 기로소 입소를 계기로 기로소는 정일품아문(正一品衙門) 보다 상위의 관부에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이는 영조연간의 『속대전(續大典)』부터 기록되었고, 정조연간의 『대전통편(大典通編)』과 고종연간의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도 그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숙종의 기로소 입소 논의 때, 강화도 사고에 가서 『태조실록』부터 『세종실록』을 살핀 지춘추 민진후가 아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군주가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전에는 없던 일이고, 군하의 기로소에 군주가 낮추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도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로소에는 어첩을 봉안하기 적합한 새로운 건물이 필요했고, 종부시 선원각을 모범 삼아 영수각을 신설하게 된다.

영조연간부터는 종부시 선원각의 예를 따라 영수각에 대한 임금의 배례가 시작된다. 숙종연간 이후의 영수각은 1909년(순종 2)의 기로소 관제 폐지까지 남아있었으나, 구한말의 관련 사진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그 모습은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숙종 이후의 기로소 행사도를 통해 그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고, 1904년에 기로소 영수각을 모범삼아 건립한 의성 고운사 연수전을 통해 과거 기로소 영수각의 형식을 살펴볼 수 있다.

기로소 영수각의 조영 모범이 되었던 종부시 선원각은 숙종연간에 건립된 건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소규모 건물로 중앙에 봉안처를 둔 것이 확인되는데, 기로소 영수각처럼 봉안처 주변을 퇴칸으로 두른 형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봉안처 사방으로 퇴칸을 설치한 것은 왕실의 상징적 물품의 봉안 및 열람 등의 의례를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조선 왕실에서는 17세기 이후 종부시 이외에도 외사고에 여러 선원각(선원보각)을 건립하였는데, 그 형식

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고, 숙종연간의 종부시 선원각과는 다른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종부시 선원각의 건축 형식이 숙종연간에 새롭게 창안된 형식인지 아니면 어떠한 조영 모범에 따라 건립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1. 『경국대전』
2. 『기사지』
3. 『대전통편』
4. 『대전회통』
5. 『속대전』
6. 『승정원일기』
7. 『신증동국여지승람』
8.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선조실록』, 『인조실록』, 『숙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9. 강관식, 「규장각 소장 光海君 13年(1621) <기석설원지도> 잔편의 복원적 고찰과 정치적 맥락의 시론적 해석」, 『한국문화 Vol.0 No.8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10. 김종수, 「교방고와 좌고에 대한 소고」, 『한국음악연구 Vol.48 No.-, 한국음악학회, 2010
11. 나동숙, 「영조의 기로소 입사 기념, 갑자(1744)진연 악장 <維聖之曲> 과 <於顯曲>」, 『우리문학연구 Vol.0 No.43, 우리문화회, 2014
12. 中村榮孝, 「朝鮮時代の耆老所に就いて」, 『市村博士古稀記念 東洋史論叢』, 富山房, 1933
13. 문화재청, 경북대산학협력단, 『4대 사고 및 조선왕조도서 보존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2013
14. 박상환, 「조선시대의 기신정책 : 기로소의 위상분석을 중심으로」, 『홍대논총 Vol.22 No.1, 홍익대학교, 1990
15. 방애영, 「조선말기 연향 가구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6. 박태용, 「구한말 노인복지사업」, 『사회복지연구 vol.11,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83
17. 송상혁, 「광해조 도상을 통해본 연회음악 고찰」, 『온지논총 Vol.0 No.13, 온지학회, 2005
18. 송혜진, 「영조조(英祖朝) 궁중 연향 기록과 도상」, 『한국음악문화연구 Vol.8, 한국음악문화학회, 2016
19. 신경숙, 「숙종조 기로 연향악장 <유천지곡(維天之曲)>」, 『동방학 Vol.2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3
20. 신경숙, 「『외진연악장』(1902.4)의 ‘가사’ 연구」, 『시조학논총 Vol.38, 한국시조학회, 2013
21. 신진혜, 「영조 12년(1736) 노·소론 화해를 위한 기로신 선은 시행과 의미」, 『사학연구 Vol.0 No.140, 한국사학회, 2020
22. 심예원, 「1744년(영조 20) 영조의 기로소 입사 의례와 정치적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Vol.- No.96, 조선시대사학회, 2021
23. 안태욱, 「조선궁중연향도의 특징과 성격」, 『동악미술사학 Vol.0 No.13, 동악미술사학회, 2012
24. 오민주, 「조선시대 기로회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5. 유시영, 「영조대 기로연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26. 이상협, 「조선시대 육조거리에 대한 고찰」, 『서울과 역사』 제81호, 서울역사편찬원, 2012
27. 이용윤, 「조선후기 사찰에 건립된 기로소 원당에 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 Vol.3, 불교미술사학회, 2005
28. 임부연, 「유교 군왕의 ‘기로’ 정치 : 영조의 전략적인 실천들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Vol.- No.43,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2
29. 조경아, 「그림으로 읽는 조선시대의 춤 문화 II : 관아공간의 춤 그림」, 『무용역사기록학 Vol.58, 무용역사기록학회(구 한국무용사학회), 2020
30. 조계영, 「문서 행정으로 본 적상산사고 선원각의 초기양상」, 『고문헌연구』 vol.57, 한국고문서학회, 2020
31. 차영량, 「조선시대 기로연 기물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32. 최경현, 「조선시대 기영회도의 일례: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본 <선조조기영회도> 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Vol.- No.40, 미술사연구회, 2021

접수(2023.05.23.)

수정(2023.07.24.)

게재확정(2023.08.03.)